



슬 때에는 佛陀는 그條를 改修正하였다.  
이에 그 一例를 들면 「만일에 比丘로서 半月以  
內에 沐浴하는者가 있스면 이는 罪墮罪라」고 하  
셨다.

그러나 印度는 熱帶地方특히 夏節에는 自然  
담이나게 됨으로 半月同安으로 沐浴을 아니하면 自  
身이 不潔함은 勿論이겠지 만은 남의게 排斥을  
當하게 되며 嘲弄을 받게 됨으로 이것이 도리어 不  
利함으로 佛陀는 이條를 修正하여 適當한事情  
이 있을 때에는 此限不在라고 하셨다. 이점으로 變  
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境遇에 依하고 時代에 依하  
여 變遷하여 감은 當然의 結果라고 아니할 수 없  
다. 普通比丘二百五十戒 比丘尼五百戒의 多大數  
가 있스나 그中重戒는 몇條目이 되지 안코 普通日  
常生活의 行爲作法에 지내지 안었다. 이에 그 一  
例를 들면 行步할 때에 너무 민눈을 떠서는 안 된  
다. 또는 飲食을 먹을 때에 너무 입을 벌려서 먹으  
민 안 된다. 하는 등이 그 例다. 이러한 등은 日常  
生活上 行爲作法이나 그러나 當時의 僧團에 있서  
서는 그러한 行爲作法을 敎示할 必要가 있섯음으

것이 아니라 그後에 戒에 不備함이 있는 것을 漸  
次 補充하여 成立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그  
一例를 들면 塔下擔死屍戒 塔下大小便戒 등이 그  
一例이다. 이에 갈한塔은 佛滅後에 起된 것임으로 이  
러한條目은 佛滅後에 制定된 것이 아닌가 한다. 國  
家에 法律이라든가 처음에 編纂할 때는 綿密히 보  
든 것을 다 觀察하여 編纂한 것이지만은 時代가  
變함에 따라 自然히 不適合條目이 생길 것이다.  
차 물론 佛敎의 隨犯隨制한 戒律이야 時代가 變함에  
따라 自然 不適合條目이 생길 것은 事實이다.  
戒律이 이와 같은 事情으로 되어 잇슴으로 二  
千五百餘年을 지낸 今일에 그대로 實行한다는 것  
은 實로 無意味한 것이다. 勿論 重大한條目이야  
古수이나 變함이 없다. 例를 들면 殺 盜 淫 妄  
等이 그것이다. 이것은 어느 時代 어느 國土라도  
變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傳하여 오는 戒律全  
部를 그대로 實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것은 實  
로 愚痴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그 一例를 들  
면 支那東晉의 有名한 慧遠法師가 三十年同安  
으로 蹤跡을 俗界에 드리지 아니하며 客舍錢送할  
에 恒常 虎溪로써 그 境界를 삼았다. 一日에 重病

로 그러한 것까지도 戒의 一數로서 至今까지 傳하  
여 왔다.  
이러한 戒律은 現實에 있서서는 다시 戒律 企  
待할 必要도 업시 이미 實行하고 잇슴으로 그것에  
重要한 것은 아니나 二千五百年前 몇條에 佛陀  
가 僧團에 들어 오는 사람들의게 諄々하신 慈念  
으로 親切이 모든 行爲作法을 敎示하신 것임을 그  
대로 保全하여 온 것이다.  
元來 戒律은 個人的 具體的 잇던 事件이 發生  
할 때에 그 將來를 警戒하여 今後에는 이러한 行  
爲를 하면 이러한 罰을 주며 이러한 制裁를 科한다  
고 한 것이 漸次로 增加되어 多大數가 된 것이다. 그  
럼으로 法律과 같치 一定한 範圍內에서 編纂한 거  
와는 그 趣旨가 다르다. 實際에 잇는 事件이 發生  
치 아니할 때는 가장 重大한 事件이라든가 戒律中에  
記載되지 아니하였다. 普通人間으로서 犯할 만 한 罪  
는 大概로 다 있스나 아무리 重大한 罪라도 그  
時 僧團의 中에서 犯하는者가 없나하면 이는 戒  
律中에 들지 아니하였다.  
이제 傳來하는 戒律은 大迦葉의 下에 編纂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時에 具足 戒가 全히 編纂된  
으로 그 病勞가 漸々危篤하여 감으로 大衆이 모  
다 그 疾病을 爲하여 술을 먹기를 勸하나 許諾치 아  
니하며 米汁을 먹기를 勸하나 終是 許諾치 아니하  
고 다음에 蜜水를 漿이라 하고 먹기를 勸하니 律  
藏을 開覽하여 不可否를 안然後에 먹었다고 함으로  
律藏 開覽을 始作하여 半도 못하여서 入藏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境遇에 있서 戒律을 짓키는 精神  
만은 衷心으로 讚仰하지 아니하면 아니할바나 그  
러나 그와 같은 事情으로서 自己의 生命까지 犧牲  
하여 嚴守하는 것은 決코 模範이라 하기 어렵다.  
戒律은 慧遠法師의 生覺하는 바와 같이 그것기 融  
通性이 업는 것이 아니다. 飲酒를 하면 精神上으로나  
肉體上으로나 被害가 甚음으로 禁酒를 한 것이 지  
만은 藥으로서 重大한 生命을 救濟하여 잇서서  
無干한 것이다. 먼저 말한 바와 같치 戒律에 밝은 特  
例가 잇는 것을 보드레도 戒律은 一定한 規定으로  
어느 時나 어느 處나 不拘하고 그것을 實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닌가이다. 勿論 어느  
것이냐 變史하여서 좃타는 것은 아니다. 事情에 依  
하여서는 變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제 傳  
하여 오는 戒律을 그대로 嚴守할 것은 업는 것이

다. 이에 그 일례를 들면 만약 比丘로서 五錢以上을 盜取하는者は 波羅夷罪에 處한다고 하겠다. 만일에 그대로 墨守한다면 四錢과 參錢은 盜取하더라도 犯罪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五錢이라 함은 當時의 印度法律이 五錢以上을 盜取하는者は 重罪에 處한다 하였기 때문에 佛敎의 戒律에도 亦是 五錢이라 한 것을 利用한 것이다. 다만 一厘五厘라도 남의 것을 盜取하는 것은 犯罪이다. 그러함으로 佛敎의 戒律은 그 죄를 究明하는데 있어서 그 動機와 結果와 罪物의 性質이 三種으로서 罪의 輕重을 定하는 것임으로 이에 말한 五錢이라 하는 것은 絶對의 標準이 아니다. 그럼으로 現實社會에 있어서서는 그 標準을 變更할 수 있다.

以上에 말해온 바는 小乘에 對한 戒律임으로 이에 다시 大乘에 對한 戒律을 말하고자 한다. 小乘戒는 먼저 말한 바와 같치 그數가 大端繁雜하나 大乘戒는 그에 反하여 大端히 簡潔하다. 大乘戒가 勿論 小乘戒를 十葦로 하여서 그우에 改良을 加添한 것이다. 小乘戒는 모든 實際上에 나타난 事實을 述한 것이지만은 大乘戒는 實際의 事實을 述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精神을 述한 것이다. 그런

나스스로 實行하며 여러 同件들도 함께 實行하기를 바래며 비난바이다.

먼저 말한 바와 같치 佛敎는 迷한 衆生으로 하여곰 開悟케 함이 그 目的이기 때문에 一切 衆生의 指導原理가 된다. 함으로 一切 衆生 卽社會를 여기고 는 바로 佛敎가 업난 것이다. 萬一에 社會를 여기고 佛敎가 따로 있다면 이난 佛敎의 一部分이요 全面的이 아닐 것이다. 卽다시 말하자면 念佛 參禪으로서 上求佛智하는 것만이 佛敎의 目的이 아니다. 上求佛智함과 同時에 下化衆生하는 것이 佛敎의 目的이다. 上求佛智는 自利의 이며 小乘의 羅漢行이다. 이에 對하여 下化衆生은 利他的 이며 大乘의 菩薩行이다. 이럼으로서 自利利他를 圓滿한 것이 佛敎의 目的이다.

그런데 우리 敎團은 過去 李朝五百年同安으로 山中에 蟄居하여 念佛 參禪看經하는 것만으로서 佛陀의 慧命을 이으며 佛弟子의 使命을 다하는 줄만 大概로 認識하였다. 그럼으로 社會의 接觸은 漸々 멀어짐을 따라 佛敎는 自然衰退하여 갔다. 그러다가 維新에 이르러 이를 覺悟하신 先師께서는 或은 慈善事業 或은 教育事業에 熱

으로 具體的 實際上的 事實을 述한 것은 없다. 大乘戒는 이에 十重禁戒와 四十八輕戒가 있어서 것을 합하면 五十八畧으로 小乘戒에 다 比較하면 그數가 簡潔하다. 그리고 大乘戒는 大體로 그 精神을 취함으로서 勿論 一個條 一個條에 局하여 守할 것은 업난 것이다. 그 일례를 들면 佛子가 遊行의 時에 난 楊枝 溲豆 灑水糞等十八種等을 恒常攜帶치 아니하면 輕垢罪에 犯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中에 灑水糞이라 함은 물은 거르난 布袋로서 印度 熱帶地方임을 따라 물에 흙이 많이 있음으로 그 대로 먹으면 衛生上에 不利할 뿐 아니라 그보다도 오히려 生物을 殺害치 아니하는 思想으로 布袋로 물을 걸너 먹던 것인데 이곳에 있어서야 何等의 必要가 업난 것이다.

以上에 말한 바는 大小兩戒를 通하여 그 性質上으로 時와 處에 따라 修正할 수 있는 것을 論하여 왔다. 果然 戒는 그 文句보다도 그 根本精神을 透得하여 時代에 應하고 地方에 依하여 그것을 適用活躍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이것이 戒律의 超越性이며 持犯開遮의 大乘行이다. 이럼으로 이에 나의 戒에 對한 所信을 率直히 論함과 同時에 이를

中하였스나 그 結果가 엇더하며 그 效果가 果然 얼마나 되나 그 業續을 欣然히 들어 말하기 困難하다. 近年에 와서 난 一般의 傾向이 五百年同安의 蟄居時代로 도라가는 感이 있다. 그 原因을 한번 推究하면 慈善事業이다. 教育事業을 한 것이 下化衆生의 眞意난 第二로 하고 時代의 思潮에 依하여 社會의 非難을 防禦하기 위하여 微溫的 動機에서 發端하지 아니하였든가 生覺된다.

下化衆生의 그 根本精神은 灼熱의 苦海 淵波에 길을 일고 情炎慾火에서 가삼을 태우는 모든 蒼生을 救濟하러 난 誓願으로서 種々の 形相을 닦아 衆生의 苦厄을 救한다고 하는 觀音菩薩의 理想을 우리도 또한 觀音菩薩의 一分化가 되어 實社會에서 觀音行을 實現하는 것이 下化衆生의 本義이다. 함으로 慈善事業이나 教育事業이나 或은 佛敎의 理想으로서 實行하면 그 成績이 날로 良好하여 질 것이다.

여러 同件들이여! 우리는 觀音菩薩의 一分化가 되어 社會大衆과 同事를 하자 그리하여 저네들 救濟하자. 始終이 입고 生滅이 업는 그 眞理를 잘 宣布하기 위하여 모든 儀式을 時代에 準하여 모든

法觀(戒律)을 現實에 빛추어 改正하자。 우리가 일즉이 光統과 慈藏의 未된진면어름(한人間假而의比丘가 될여고말고 차라리 불기참人間의々한 現代人이되기爲하야 우리의信仰內容을 究치자。 우리는 이즉 貞은니 帶妻도하며 肉食도하자。 하나 우리는 다맛 性的問題를 解決하기爲하야 結婚하지말고 부더년의 聖的의능리를잇기爲하야 남다른配偶를 고르자。 그다음에 우리 貞은품을 健全하기爲하야 食肉을하자。 하나 肉의 肉의生命을 屠殺하지는말자。 이는 慈悲의種子를 究단것이니 慈悲種子는 則佛種子이다。 그리하나 우리는 꼭 戒키지아니하면 안될個條가잇스니 이는 妄語와 綺語이다。 이는 우리佛敎倫理뿐만아니라 社會道德에잇서서도 戒키지안하면 안될條目이다。 殺 盜 淫 酒를 現成이라하면 妄語綺語는 隱成이다。 그리하야 妄語綺語로는 自己의 가정親密한 父母兄弟까지도 속일수가잇스며 또는 自己가 속히질수도잇다。 이리하여 妄語와 綺語의 非笑이 잇는사람은 普通世俗人。로서도 無信用, 不正直으로 奸嫉하기의인다。 流言蜚語로서 無端한사람 無端한社會를 中

# 朝鮮佛敎中等教育問題

姜 裕 文

現下朝鮮佛敎에잇어 緊急한問題를나면 實도 한두가지가안이겠스나 教育問題 特히 中等教育問題에對하야는 우리가 慎重도熱心히 檢討하지안으면 안될것이라한다。

元來도 中等教育이라하는것은 教育的意味로보아 中心點이되갓는 同時에 가장 重要視하여야될것이다。 初等教育이 教育的效果의基礎라면 中等教育은 그의結實이라고볼것이다。 그리고 저一專門大學에 이르러서는 실은바 教育的이라기보다 知識的 學問的으로만 意味를가진것이라고 보고싶은것이때 나의말하고저하는바 教育的으로본다면 오히려 未어은意義를가지지 안엇다고할것이다。 한거름나아가서 나는 今日教育施設은 모름이中

傷하고 離間하는것은 君子紳士의 할것이아니며 甘言利說로써 個人과 或은 大衆을弄絡하는것은 朝聚暮散 背義悖法의 무리가아니고는그런수업다 薔薇花와 海棠花가 같지아니함은 아니나 가시돋친것이 그病이라내가실히하며 대와술이 質朴하지안음은 아니나 雪寒風에도 凜々然하게高節을 자랑함으로써 내사랑하는까닭이다。 貞은同伴여!! 우리는戒律을적키는것보다 佛恩을가기爲하야 寺恩을가기爲하야 넘어가는法城을 밟고참기爲하야 以上에말한이것만은 實行합시다。

(七四頁로후리續)  
잇서서 健康狀態는아니라고 唯現 現今에 南湖가 「법」을말하기前 奮然히 「自己를알어야한다」고 雄叫할것은 現代科學으로 敵機를 擊成하는 探照燈은 製作하고 人體에들어간 彈丸의所在을 알이내는 엑스光線은 이서도 마음의暗黒을 빛추는燈籠과 마음의煩悶을 撲치는藥이 업는것을 痛切히告진 所以이다。 幽明의결이 다름으로 지공 南湖의 色身을 볼수업스나 本來부터 名相을 실히하는 南湖에게 累를 지친가 두리워하이 이꽃을 누는다。 戊寅十一月十日

等까지에미치고 專門以上으로는 特別한機關施設은 要치말고 옛년專門家를 師로삼아 各自의自由研究에 맡길것이란것을 이런機會에서 主張하고자하는바이다。 萬一 나의이런 主張으로보아오나면 中等教育의重要性이란 實도 想像以上으로큰것일것이다。 여기엇지 萬全의努力이업고될것이

一

今日朝鮮佛敎는 教育機關으로 專門學校가 한아 저육이 面目을가추어잇을뿐이고 中等初等은 거의 불만한것이업는우에 地方에 若干 施設이잇다 할지라도 初等中等의區劃이 分明치못한바있다。 生徒의 年齡差異가 너무懸隔하야 生理的成長에 適應한教育을 배풀지못하는것은 過度期에잇